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연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의 원활 및 그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의 안정과 생활환경보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농약의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의 원활 및 그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약”이라 함은 농작물(수목 및 농·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하는 균·곤충·옹애·선충·바이러스·기타 농립수산부령이 정하는 등·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 또는 억제하는데 사용되는 <u>생장조정제</u> 및 <u>약효를 증진시키는 재료</u> 를 말한다.	제2조(정의) 1. <u>집초·기타</u>
〈 신 설 〉 <u>제초제, 기타약제와</u>
〈 신 설 〉 <u>약제를</u> 말한다.
2. “농약명”이라 함은 주된 적용병해충.....	단, 기타 동·식물 및 방제에 사용하는 기타약제의 범위는 농립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제조업”이라 함은 농약을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이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함을 말하고, “수입업”이라 함은 농약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함을 말하며, “원제업”이라 함은 원제를 합성·제조하여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자체농약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함을 말한다.	2. 제1호의 방제에 사용하는 천적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농약으로 본다.
4. “제조업자”라 함은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3조(농약의 수급조절 등)	4. <u>국내에서 농약의 품목을</u> <u>농약의 품목</u>
제4조(농약계정설치 및 재정지원) <u>국내에서 원제를</u> <u>판매하는</u>
제5조(농약의 품목고시 등)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6조(품목고시를 위한 시험)	제3조(농약의 수급조절 등) (현행과 같음)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립수산부장관에게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수입업의	제4조(농약계정설치 및 재정지원) (현행과 같음) 〈 삭 제 〉 〈 삭 제 〉
	제5조(제2조업·수입업·원제업의 등록) ① 제조업·수입업 또는 원제업을 하고자
 <u>농촌진흥청장</u> <u>업종별로</u>
 <만, ... 이하 삭제>

연 행	개 정 (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u>자는</u>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요건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u>자는</u> 업종별로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그 시설중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조업자 · 수입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u>변경한 때에는</u> 농촌진흥청장
④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내에 이를 <u>농림수산부장관에게</u>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조업자 · 수입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u>농촌진흥청장</u>
제8조(품목의 등록) 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품목의 등록)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농약의 품목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신 설 〉	〈 신 설 〉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실시한 농약의 약효 · 약해 · 독성 및 잔류성에 관한 시험성적을 기재한 서류(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와 농약의 시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2. 농약의 종류 및 명칭(농약명, 품목명 및 상표명) 3. 이화학적 성상 및 유효성분과 기타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4. 품목의 제조공정 5.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 및 재질과 그 용량 6. 적용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사용방법 및 사용량 7. 약효보증기간 8. 인축에 유해한 농약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해독 방법 9. 수서생물에 유해한 농약에 대하여는 그 내용 10. 인화성, 폭발성 또는 피부를 손상시키는 등의 위험이 있는 농약에 대하여는 그 내용 11. 보관 · 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2. 제조장소의 주소 13. 기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농업과학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으로</p>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연 행	개 정 (안)
	<p>하여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하여 농약의 시료를 검사도록 한다.</p> <p>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류를 반려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번호 및 등록년월일 2. 등록의 유효기간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중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내용 4. 제조업자의 성명과 주소 5. 제조장소의 주소 6. 기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⑤ 제조업자 제조를 농촌진흥청장</p>
<p>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품목의 제조 또는 수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폐지예정일 20일전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p> <p>〈 신 설 〉</p>	<p>제7조(품목등록신청서류의 반려)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6조 제3항의 검토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보류하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서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 2. 당해 농약의 약효가 현저히 떨어지고 농약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3.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해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 농작물 등에 해가 있을 때 4. 당해농약을 사용함에 있어 위해방지요령을 알려준 경우에도 인축에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5. 당해 종류의 농약이 많은 양이 공급되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해 농약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수서동물에 대한 독성의 정도 및 지속성으로 보아 수서동물에 대하여 그 피해가 현저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을 때 6.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해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 농작물 등에 대한 잔류성 정도로 보아 농작물 등에 오염이 발생하고 그 오염된 농작물 등의 이용이 원인이 되어 인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7.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해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 토양에 대한 잔류성 정도로 보아 농경지 등에 오염이 생기고 오염된 농경지에서 생육된 농작물 등의 이용이 원인이 되어 인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8. 당해 종류의 농약이 많은 양이 공급되어 신청서에

연 행	개 정 (안)
	<p>기자된 내용에 따라 당해 농약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공공수역(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에 의거 규정된 공공수역을 말한다)의 수질에 오염이 생기고 그 오염된 물의 이용이 원인이 되어 인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p> <p>9. 당해 농약의 명칭이 그 주성분 또는 효과에 대하여 오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을 때</p>
〈 신 설 〉	<p>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p>
〈 신 설 〉	<p>제8조(이의신청)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류를 반려받았을 때에는 그 반려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 신 설 〉	<p>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p>
〈 신 설 〉	<p>제9조(품목등록의 유효기간) 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p>
〈 신 설 〉	<p>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의 재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 신 설 〉	<p>제10조(승계) 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한 제조업자가 그 영업을 등록한 품목과 함께 양도한 때에는 당해 양수인은 등록을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p>
〈 신 설 〉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5조 제1항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고 제조업 및 국내제조품목의 등록증을 재교부 신청하여야 한다.</p>
〈 신 설 〉	<p>제11조(신청에 의한 변경등록등)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중 제6조 제2항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농림수산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등록증, 변경후의 시험성적서 및 농약의 시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변경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p>
〈 신 설 〉	<p>② 제6조 제3항·제4항과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p>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연 행	개 정 (안)
	<p>이 조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에 이를 준용한다.</p>
〈 신 설 〉	<p>③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제6조 제2항 각호중 제6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그 변경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5일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고 변경사항이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p>
〈 신 설 〉	<p>제12조(직권에 의한 변경등록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미 등록된 농약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제7조 제1항 제2호 내지8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등록자에게 당해 농약의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하게 하거나 그 품목의 등록을 취소처분할 수 있다.</p>
〈 신 설 〉	<p>② 농촌진흥청장은 이미 등록된 농약의 적용병해충 범위에 없는 새로운 돌발병해충이 출현하거나 사용량이 적어 적용대상작물로 등록되지 않은 작물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농림수산부령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적용대상 병해충 또는 농작물의 범위에 추가할 수 있다.</p>
〈 신 설 〉	<p>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의 경우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 신 설 〉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이나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일로부터 15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은 처분 상대방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이에 대한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 신 설 〉	<p>제13조(등록의 실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 제1항에 의한 등록을 한자가 그 등록에 따른 농약의 제조업을 폐업하였을 경우 2.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은 법인이 해산하고 그 청산이 종료되었을 경우
〈 신 설 〉	<p>제14조(수입품목의 등록)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의 등록을 한자가 외국에서 제조한 농약 또는 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품목별로</p>

연 행	개 정 (안)
〈 신 설 〉	<p>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용 또는 학술연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6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수입되는 품목의 등록에 관한 사항에, 제15조의 규정은 수입되는 원제의 등록에 관한 사항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원제업자”는 “수입업자”로 “국내제조품목”은 “수입품목”으로 본다.</p>
제9조(원제업의 등록)	<p>〈 삭 제 〉</p> <p>제15조(원제의 등록) ① 원제를 합성·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원제의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시험성적을 기재한 서류와 당해 원제의 시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제에 대하여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2. 원제의 종류, 명칭, 이화학적 성상 및 주성분과 기타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3. 그 원제의 합성·제조공정 4. 인화성, 폭발성 등 위험이 있는 원제는 그 내용 5. 제조장소의 주소 <p>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술원장으로 하여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하여 원제의 시료를 검사토록 한다.</p> <p>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원제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번호 및 등록년월일 2.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중 제2호의 내용 3. 원제업자의 성명과 주소 4. 제조장소의 주소
〈 신 설 〉	
〈 신 설 〉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연 행	개 정 (안)
<p>② 원제업자가 그 원제의 합성제조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폐지 예정일 20일전까지 <u>농림수산부장관에게</u>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원제업자가 그 원제의 합성제조를 휴지하고자 〈 신 설 〉</p>	<p><u>5. 기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p> <p>⑤ 등록한 <u>농촌진흥청장</u>.....</p> <p style="text-align: right;">〈 삭 제 〉</p> <p>⑥ 제8조 · 제10조 · 제13조의 규정은 원제의 등록에 관한 사항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은 "원제업"으로 본다.</p>
<p><u>제10조(판매업의 등록)</u></p> <p>제11조(방제업의 허가 등) ① 방제업을 하자 하는 <u>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p> <p>② 방제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p>	<p><u>제16조(판매업의 등록) (현행과 같음)</u></p> <p><u>제17조(방제업의 등록) ①</u> <u>에게 등록하여야</u></p> <p>②(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 삭 제 〉</p>
<p><u>제11조의 2(수출입식물방제업의 허가)</u></p> <p>③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p>	<p>③(현행과 같음)</p>
<p><u>제12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취소) ①</u> <u>농림수산부</u> 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 제5조 제2항 본문 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이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이를 판매한 때 2.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시설을 변경한 때 3.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이상 휴업한 때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의 등록취소의 ...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한 때 6. 제2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완명령에 위반한 때</p>	<p><u>제18조(제조업 · 수입업 · 원제업의 등록취소) ①</u> <u>농촌진흥청장</u> <u>수입업자 또는 원제업자</u> <u>디만</u>, 1. 제6조 제1항 · 제14조 제1항 · 제15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u>품목</u> 또는 <u>원제를</u> 2. 제5조 제3항의 3. 제5조 제4항의 <p style="text-align: right;">〈 삭 제 〉</p> 4. 제20조의 5. 제27조 제1항의</p>
<p><u>제12조의 2(수출입식물방제업의 허가취소)</u> 식물검역소장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1. 제1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시설을 변경한 때</p>	<p><u>제19조(수출입식물방제업의 등록취소)</u> <u>등록을</u> 1. 제17조 제3항의</p>

연 행	개 정 (안)
2.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 한 때 3.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를 2년이내에 3회이상 받은 때 4. 이 법 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 5. 방제수가 과다징수 등 방제질서를 문란하게 ….	2. 제20조 제1항의 … 3. 제20조 제1항의 …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제13조(영업의 정지, 등록·허가의 취소 등) ① 농림수산부장관·도지사 또는 식물검역소장은 제조업자·수입업자·원제업자·판매업자 또는 방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경고를 발하거나, 2년의 범위안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있어서는 품목의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영업의 정지, 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
1. 제3조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 < 신 설 >	1. (현행과 같음)
2.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이상 당해 농약이나 원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아니하거나 휴지 또는 휴업한 때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 < 신 설 >	2. 제6조 제1항,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품목을 보관, 진열 또는 판매한 때 3. 제6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의 …
4.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을 진열 또는 판매한 때 5.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때 6.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때 7.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농약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명되거나 허위의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한 때 8.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시료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9.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완명령에 위반한 때 10.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관리대장 등 장부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그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11.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4. 제22조의 표시사항을 변조하여 허위로 표시를 한 때 5. 제23조의 … 농약을 보관하거나 7. 제24조의 … 8. 제25조 제2항의 … 9. 제26조의 … 10. 제26조 제1항의 … 11. 제27조 제1항의 … 12. 제27조 제2항의 … ...
	13. (현행 제11호와 같음)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연 행	개 정 (안)
<p>12.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허기를 받은 자가 1년이상 방제실적이 없거나 식물검역소장이 정하는 수출입식물검역처리규정을 위반한 때</p> <p>②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조업자·수입업자·원제업자·판매업자 또는 방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p> <p>제14조(허가 또는 등록의 제한) 제12조, 제12조의 2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그 허기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p>	<p>14. 제17조 제1항 단서조항 등록을</p> <p>② 농촌진흥청장·도지사 또는 식물검역소장은</p> <p>제21조(등록의 제한)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등록이 등록을</p>
<p><u>제15조(농약의 표시)</u></p> <p>제16조(진열·판매의 금지)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약을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농약 2. 개포장 또는 분포장을 한 농약, 다만, 수입업자(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을 하는 제조업자를 포함한다)가 수입하여 개포장 또는 분포장을 한 농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자체검사필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농약 4. 농약의 용기나 포장의 표기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농약 5.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 	<p>제22조(농약의 표시) (현행 제15조와 같음)</p> <p>제23조(보관·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농약을 보관하거나 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 제1항·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되지 아니한 품목 2. 제22조의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변조하여 허위의 표시를 한 3. 〈 삭 제 〉 <p>4~6. (현행 3~5호와 각각 같음)</p>
<p><u>제17조(허위광고 등의 금지)</u></p> <p><u>제18조(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u></p> <p>제19조(농약의 검사 등) ① 농림수산부장관·도지사 또는 식물검역소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수입업자·원제업자·판매업자 또는 방제업자가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하는 농약이나 그 원료 또는 관계장부나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농약이나 그 원료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에 대하여 출하전에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자체검사필증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p>	<p>제24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현행과 같음)</p> <p>제25조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 (현행과 같음)</p> <p>제26조(농약의 검사 등) ① 농림수산부장관·농촌진흥청장·도지사·기술원장 또는 식물검역소장은</p> <p>② 첨부하여 출하한 후 기술원장이 정하는 검사기준에 의한</p>

연 행	개 정 (안)
<p>자체검사성적서를 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이하 “자재검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출하하여야 한다.</p> <p>③ 자체검사소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하전에 그 농약에 대한 검사의뢰를 한 때에는 이를 검사(이하 “신청검사”라 한다)하여야 한다.</p> <p>④ 자체검사소장은 농약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농약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할 수 있다.</p> <p>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⑦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하여야 한다.</p> <p>제20조(농약관리에 관한 보고 등) ① 농림수산부장관·도지사 또는 식물검역소장은 제조업자·수입업자·원제업자·판매업자 또는 방제업자에 대하여 농약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시설에 대하여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p> <p>② 제조업자·수입업자·원제업자 또는 …</p> <p>제20조의 2(청문) 농림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식물검역소장은 제12조, 제12조의 2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1조(수수료) ①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료를 자체검사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자체검사성적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기술원장은</p> <p>④ 기술원장은 그 농약 및 원제에</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기술원장이 정한다.</p> <p>⑦ (현행과 같음)</p> <p>제27조(농약관리에 관한 보고 등) ① 농림수산부장관·농촌진흥청장·도지사·기술원장 또는 식물검역소장은</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8조(청문) 농촌진흥청장</p> <p>제29조(수수료) ①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p> <p>② 제26조 제3항의 기술원장.....</p> <p>제30조(농약관리위원회 설치)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의</p>
〈 신 설 〉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연 행	개 정 (안)
	<p>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등록 신청서류의 반려기준</p> <p>2.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제등록 기준</p> <p>3.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p> <p>4.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u>< 신 설 ></u>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농촌진흥청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u>< 삭 제 ></u>
제22조(농약관리기금)	<p>제23조(적용배제) ①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수출목적으로 농약이나 원제를 제조하고, 이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농약이나 원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농약이나 원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이 법에 의한 농약에 대하여는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농약의 생물학적 시험을 …</p>
제24조(권한의 위임)	<p>① 농림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자재검사소장, 식물검역소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도지사는…</p>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1. 제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지되지 아니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p> <p>2. 제7조 제1항 · 제8조 제1항 · 제9조 제1항 · 제10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및 제11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약이나 원제의 제조 · 수입 · 판매 또는 방제를 업으로 한 자</p>
	<p>제31조(적용배제) ① ………………</p> <p>……………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약이나 원제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한다.</p> <p>② ……………… 농약 및 원제에 대하여는 유해화학 물질관리법을 ………………</p>
	<u>< 삭 제 ></u>
제32조(권한의 위임)	<p>①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 ………………</p> <p>…………… 기술원장 ………………하거나,</p> <p>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제33조(벌칙)	<p>1. 제6조 제1항 · 제14조 제1항 · 제15조 제1항 ……………… 등록 ……………… 품목 또는 원제를 ………………</p> <p>2. 제5조 제1항 · 제16조 제1항 ·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p> <p>……………</p> <p>……………</p> <p>……………</p>

연 행	개 정 (안)
3. 제15조 규정에 의한 농약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자 4.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을 <u>진열</u> 또는 판매한 자	3. 제22조 4. 제23조 보관 · 진열
제26조(별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94. 11. 11) 2.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3.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시료의 수거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을 출하한 제조업자 · 수입업자와 허위의 자체검사성적서를 작성한 검사책임자 5.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수거 또는 폐기의 명령에 위반한 자	제34조(별칙) 1. 제24조의 2. 제26조 제1항의 3. 제26조 제2항의 4. 제26조 제5항의
제27조(별칙)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을 취급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별칙) 제25조 제2항
제28조(별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 제3항 및 제4항 · 제8조 제2항 및 제3항 · 제9조 제2항 및 제3항 ·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한 방제업자 3.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 4.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관리대장 등 장부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	제36조(별칙) 1. 제5조 제3항 및 제4항 · 제6조 제5항 · 제15조 제5항 · 제16조 제2항 또는 제17조 제2항 2. 제25조 제2항
제29조(별칙) 방제업자 이외의 농약사용자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별칙) 제25조 제2항
제30조(별칙) ① 이 법에 위반하여 농약을 제조 · 수입 · 판매 또는 사용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8조(별칙)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양별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제39조(양별규정)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연 행	개 정 (안)
<p>·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내지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p> <p><u>제32조(몰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자가 소유·소지하는 농약(동조 제2호중 제10조 제1항·제11조 제1항 및 제11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가 소유·소지하는 농약중 이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농약은 제외한다)과 그 정을 알고 제3자가 취득한 농약은 그 전부를 몰수한다. 다만, 그 농약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u></p> <p><u>제33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 <u>제33조 내지 제36조의</u></p> <p><u>제40조(몰수) 제33조</u> (..... <u>제16조 제1항</u> · <u>제17조 제1항의 규정에</u>)</p> <p><u>제41조(시행령) (현행과 같음)</u></p>
<p>부 칙 ①~⑤</p> <p>부 칙< 89. 3.31></p> <p>부 칙< 94. 11. 11></p> <p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p>	<p>부 칙(현행과 같음)</p> <p>부 칙(현행과 같음)</p> <p>부 칙(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 (제조업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제조업, 수입업, 원제업, 판매업, 방제업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p> <p>③ (품목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약과 원재는 이 법에 의하여 이 법의 시행일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록된 농약중 수입완제품은 이 법에 의한 수입품목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p> <p>④ (농약관리기금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농약관리기금은 사단법인 농약공업협회가 농약의 안전사용을 위해 시험·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과 기금관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p>